

# 2015년 노사단체 임금인상(권고)안 비교\*

—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지난 2월과 3월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은 2015년 임금인상 요구안 및 권고안을 각각 발표하였다. 먼저 한국노총은 지난 2월 1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15년 임금인상요구율을 7.8%(월 245,870원)로 확정하였다. 이는 2015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기초로 노동자 가구원수,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 비중,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것이다.

2014년 전체노동자 월평균임금(월 정액임금 + 상여금 월할액)이 3,157,323원인 상황에서 2015년에 실제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인 월 4,307,84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36.4% 인상해야 하나, 필요 생계비와 현재 임금수준의 차이를 일시에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근로소득의 생계비 충족률을 매년 올리는 것을 목표로 2015년 근로소득의 생계비 목표충족률을 79%로 정하고 2015년 임금인상요구율은 이에 해당하는 7.8%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의 경찰부가조사(2014년 8월 기준)를 토대로 한 비정규직의 임금 월 144만원이 정규직의 49.9%에 해당하는 수준임을 고려하여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을 17.1%로 결정하였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액을 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액인 월 245,870원과 동일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민주노총은 지난 3월 3일 표준생계비 확보 및 생활임금 보장, 임금불평등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2015년 임금인상요구안은 표준생계비 충족률 76.9% 실현을 목표로 정액급여 기준으로 월 230,000원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동일금액인상 하한선'으로 제시하였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표준생계비가 월 5,554,046원이고 총액임금이 월 3,948,773원이라 정액급여 기준으로 표준생계비 100%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월 1,144,560원이 인상되어야 하지만,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 등을 고려하여 2015년 정액급여 기준 표준생계비의 76.9%에 해당하는 월 230,000원

\* 본 자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한국경총)에서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기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을 인상액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총은 지난 3월 5일 '2015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발표하고, 2015년 적정 임금조정률을 1.6%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하였다.

경총은 올해 임금을 국민경제생산성을 감안해 1.6%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정 임금조정률 1.6%에는 통상임금, 60세 정년의무화 등 노동시장 제도변화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포함되므로 최종 임금조정률은 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한편,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고임금 대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여 그 재원으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주요 노사단체의 임금인상 요구율과 제시율 추이〉

(단위: %)

구분	노동계 <sup>1)</sup>		경영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2011	9.4	- <sup>2)</sup>	3.5
2012	9.1	9.3	2.9
2013	8.1	- <sup>3)</sup>	-
2014	8.1	-	2.3
2015	7.8	-	1.6

주 : 1) 노동계 요구율은 정규직 요구율을 기준으로 함.

2) 2011년은 정규직 임금요구안을 일률적으로 발표하기보다는 표준생계비를 근거로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위해 산업별로 요구안을 정함.

3) 민주노총은 2013년부터 동일금액 요구로 전환하여 2013년 219,170원, 2014년 225,000원, 2015년 230,000원을 전체 노동자 연대 임금인상 요구안의 하한선으로 요구 제시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5 KLI 노동통계』, 2015.4.